#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47

발의연월일: 2022. 6. 9.

발 의 자:이원택·신정훈·김영호

위성곤 • 유정주 • 최인호

서삼석 • 윤재갑 • 주철현

장경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민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함으로써 농어 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조세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농업·어업·축산 분야에 대한 각종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어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

2, 제88조의5, 제99조의4, 제105조 및 제106조).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양도함	<u>2026년 12월 31일</u>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_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 ④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u>2026년 12월 31일</u>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⑧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지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시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00001 10 0 01 01
<u>2026년 12월 31일</u>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1. ~ 8. (생략)

###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

<u>.</u>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26년 12월 31일

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 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 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2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6
<u>년 12월 31일</u>	

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u> <u>12월 31일까지</u> 받는 배당소 득등: 100분의 5
- 2. <u>2024년 1월 1일</u>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 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 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 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u>12월 31일까지</u>
2. 2028년 1월 1일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202
6년 12월 31일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1. · 2. (생략)
- ② ~ ⑧ (생 략)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경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지
  -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u>a</u> ) ①
,
2026년 1
2월 31일
<u> </u>
· 1. ~ 6.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i></i>

$\circ$	경우	제9.	호는	<u>202</u>	22년	12	2월
<u>31</u>	<u>일</u> 까지	수약	입신고	2하	느	분에	만
적-	용하고,	제2	22호 <sup>-</sup>	느 '	2024	4년	12
월	31일까	가지	수입	]신.	고히	는	분
에	만 적용	하디	₹.				

$1. \sim 22.$	(생	략)
---------------	----	----

3	$\sim$	(5)	(생	략)

	<u>2026</u> 1	<u>년 12월</u>
<u>31일</u>		
1. ~ 22.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